



국 민 권 의 위 원 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결 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결 정

의 안 번 호 제 2013 - 63호

의 안 명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건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

관 련 기 관 주식회사 □□□ □□□□□고객본부

결정연월일 2013. 4. 22.

보호조치 신청인 □□□(1963년생, 주식회사 □□□ □□□□□고객본부
가평지사)

주 문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건 관련, 보호조치 신청요구(2012-제1호)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신청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회사 □□□ □□□□□고객본부장은 해임의 불이익처분을 당한 신청인에 대하여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할 것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자인 주식회사 □□□ □□□□□고객본부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년 4월 22일

위원장	이 성 보	_____
위 원	박 재 영	_____
위 원	최 현 복	_____
위 원	홍 성 칠	_____
위 원	황 현 주	_____
위 원	문 한 식	_____
위 원	정 기 창	_____
위 원	신 영 기	_____
위 원	이 희 정	_____
위 원	정 현 윤	_____
위 원	이 학 수	_____



<별 지>

1. 기초사실

가. 사건 개요

- 1) 신청인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신청기관으로부터 2012. 3. 9.부터 5. 8.까지 정직처분을 받고 복직 시점에 2012. 5. 9.자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로 전보조치된 후에 2012. 12. 31.자로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해임된 자이다.
- 2) 신청인은 2012. 2. 29. 방영된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에 출연,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관련하여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오마이뉴스 등에서 위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의혹 기사를 보도하였다.
- 3)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2. 3. 9. 신청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 유포 등 다른 비위사실을 이유로 정직 2월(2012. 3. 9. ~ 5. 8.)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 4) 신청인은 2012. 4. 30. 위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는 2012. 5. 9. 신청인을 □□□□ □□□단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였다.
- 5) 신청인은 2012. 5. 22.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8. 27. 위원회는 □□□의 신청인에 대한 가평지사의 전보발령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6) □□□는 2012. 9. 25.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7) 신청인은 2012. 10. 14. □□□동지회 축구대회 참가 후 허리통증으로 2012. 10. 15. 연가를 사용하면서 2012. 10. 16.부터는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팀장에게



전화하였고, 우편으로 평소 내원하던 한의원 진단서를 발송하였다.

- 8) 팀장은 2012. 10. 16. 전화통화와 메시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출근하여 병가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신청인은 '허리통증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진단서를 송부'하였음을 알리고 동 한의원에 통원치료를 하였다.
- 9) 팀장은 2012. 10. 17. 이후에도 전화, 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수차례 출근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신청인은 2012. 10. 17.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2012. 10. 20. 퇴원 후 11. 9.까지 동 정형외과에 통원치료하였다.
- 10) 신청인은 2012. 10. 25. □□□ 가평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팀장과 병가 승인 요청과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
- 11) 신청인은 2012. 10. 23.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에 참석하였고, 10. 2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방문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와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11. 1. 중앙노동위원회에 참석하였고, 11. 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위 고소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다.
- 12) 신청인은 2012. 11. 12.부터 11. 18.까지 부친상을 치루고 2012. 11. 19. 업무에 복귀하였다.
- 13) 신청인은 2012. 11. 30. 공익제보와 관련된 '호루라기재단'과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의 '올해의 호루라기상' 및 '투명사회상' 수상을 위해 조퇴 또는 유계 결근을 팀장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팀장은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은 2012. 12. 6. 오후 5시경 조퇴하여 '호루라기재단'의 시상식에 참가하였으며, 2012. 12. 7. 오후 5시경 조퇴하여 '한국투명성기구'의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 14) □□□ □□□□□고객본부는 2012. 12. 26. 신청인의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2. 12. 31.자로 신청인을 해임하였다.



나. 공익신고

1) 공익신고 내용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된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와 관련하여 2011.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는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화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 전화망에서 모든 전화신호처리가 종료된 국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문자투표의 경우, 국제문자서비스 요금이 약관에 건당 100원임에도 150원을 부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를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2) 조사결과 통보

위 공익신고에 대해 위원회는 '12. 8. 10.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위반 관련 공익신고 사건으로 송부하였다.

'13. 2. 13.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사 주최자가 전화투표 방법을 홍보하면서 국내외 전화 여부를 구분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투표 참여자는 고지된 요금을 인지하고 전화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 이익 저해성이나 현저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리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3) 신청인의 1차 보호신청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신청인은 □□□로부터 「제주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건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종전 근무지 서울(을지)지사에서 무연고 지역인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를 받았는 바, 이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받은 것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인근 지역으로 전보를 원한다며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연고지역에 전보발령을 받아 불이익 처분을 당한 신청인에 대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 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는 위원회 결정을 불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다. 2차 보호조치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2012. 5. 9. 종전 근무지 서울 을지지사에서 무연고지역인 가평지사로 전보조치를 받은 후 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신청인을 해임하였는 바, 이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하는 보호신청을 하였다.

2. 쟁점 검토

1) 보호조치 각하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18조에는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각하 사유에 관하여 나열하고 있으며, 본 건이 위 조항에 적용되는 경우, 각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18조제2호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제1호의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와 제6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등의 경우에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의 공익신고가 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보호조치 결정은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



을 경우” 하는 것이지 공익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 제10조제2항제1호와 같이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동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가 아니므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실익이 있고, 또한 신청인은 위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 위원회는 보호결정을 한 바 있어 신청인은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고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공익신고 및 보호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되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가 무의미해 지므로 이 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있었다면 위원회가 보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실익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보호조치 대상 여부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익신고와 신청인이 받은 불이익조치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가) 법 제17조 공익신고자등 해당 여부

공익신고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미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원거리 지역 전보라는 1차 불이익 조치에 대해 보호신청을 하여, 위원회가 신청인을 공익신고자등으로 인정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한 바 있고,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하고 재차 신청인을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임 조치한 것은 '불이익조치 추정' 관련 법 제23조제2호¹⁾의 "공익 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는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공익신고자임이 상당하다.

나)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와의 인과관계 등

□□□는 본 건 해임조치와 공익신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복무권자의 병가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일방적인 병가신청으로 인한 무단결근 및 공익 제보 관련 시상식 참가에 따른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해임의 절차와 과정을 살펴보면,

□□□는 신청인의 '제주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의혹'과 관련된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무연고 원거리 지역으로 전보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후, 공익 신고자 보호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근거리 지역 배치 전보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 중에 신청인을 무단결근·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하였는 바,

□□□가 회사에 불리한 공익신고를 한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해 원거리 지역 전보발령,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귀책사유 유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임조치 등 신청인을 조직으로부터 퇴출하기 위한 일련의 불이익조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 제23조제2호에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1)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가 본 건 관련 '12. 4. 30. 신청인의 공익신고 후 '12. 5. 9.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평지사예 전보조치한 이후 위원회의 근거리 전보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일반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병가를 고의적으로 불승인하여 무단결근이라는 귀책사유를 만들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 12. 31. 해임조치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인 신청인을 퇴출하려는 의도에서 해임조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이 받은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해임) 관련 판단

(1) 신청인 주장

2012. 4. 30. '제주 세계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였고, 2012. 5. 22. □□□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전보조치를 받았 으며, 2012. 10. 16.부터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는 고의적으로 불승인하고 무단결근 처리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2012. 12. 31. 신청인을 해임하였 으므로 원상회복을 요구함

(2) 피신청기관 주장

신청인이 제출한 한의원 진단서 상의 진단일이 2009년 9월로 되어 있고, 해당 한의사는 전 □□□ 노조 출신이며, 진단서의 향후치료의견에 '장시간에 걸친 출퇴근, 과중한 업무부담감' 등 신청인의 의견대로 필요 이상의 내용을 기재 하고, 진단서의 병명이 '요추 및 경추 추간판(디스크) 탈출'이지만 추후 제출한 정형외과 진단서는 병명이 '요추염좌'로 기재되어 병명이 달라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병가를 불승인하고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고의로 복무권자의 지시명령을 19일간 불이행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 해임처분은 사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임



신청인이 무단결근 기간 중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참석 1회,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1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출석 등 2회 등 총 4회 외부활동을 하였으므로 치료를 위해 병가를 제출한 것이 아님

12월 5일, 12월 6일 조퇴에 대한 불승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단조퇴를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양정의 가중 사유에 해당함

신청인과 동일한 사유인 병가불승인과 관련되어 무단결근으로 해임된 사례가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본 건 관련 신청인의 해임처분도 정당한 것이므로 위원회에서도 본 건에 대해 기각할 것을 요청함

(3) 위원회 의견

신청인의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3년 2월 28일부터 사건 발생 직전인 2012년 10월 5일까지 허리 척추 관련 치료기록이 86회에 이르고 있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매년 시행하는 정기검진 기록에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척추 관련 증상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신청인이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인 허리통증을 앓고 있음이 인정된다.

특히, 병가신청 직전인 9월 8일부터 10월 5일까지 28일간 14회의 허리통증 치료 기록이 집중되어, 본 건 관련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왔고 원거리 전보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등이 허리통증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한 인과성과 병가 신청 전 날 축구대회 참가²⁾ 후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허리통증으로 인한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결근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의원 진단서의 최초진단일에 대하여, 해당 한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당해 한의원에서 동 병명으로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단일은 '최초진단일'을 기술한 것이고, 발행일이 2012년 10월 15일로 되어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향후치료의견에도 병세

2) □□□□동지회 연례행사로 참가



의 안정적 호전을 위해서는 장기간(2주)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의사의 전문가적 소견을 기술하였을 따름이었고 진단서 발급 당시 신청인의 상태를 봐도 반드시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소명할 점을 고려할 때, 한의원 진단서로 병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만한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진단서 상의 진단일, 병명, 신청인의 상태 등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면 당해 한의원 및 정형외과에 직접 문의하여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병원에 전화해 볼 생각이 없었다, 움직일 수 있으면 출근하여 소통해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해당 팀장이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애초부터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승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전보조치된 가평지사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2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총 5시간의 통근시간으로 인해 근무시간 외에 회사 근처에서 통원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는 허리통증 치료를 위한 병가가 필요함이 상당함에도 팀장이 병원 진단서를 신뢰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비전문적 정보를 근거로 신청인의 허리통증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출근을 지속적으로 종용한 것은 신청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 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무단결근 기간 중 외부활동에 대하여, 10월 23일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참석, 10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신청인 명예훼손 관련 □□□에 대한 고소장 제출, 11월 1일 공익신고로 인한 부당전보 등과 관련된 □□□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출석, 11월 5일 위 고소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출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외부활동은 공익신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본인이 직면한 신상을 방어하기 위한 상황적 사항으로서 신청인의 사생활 및 해사행위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신청인이 12월 5일과 12월 6일 무단조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징계양정의 가중 사유로 처리하였으나, 신청인이 '호루라기재단'과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 각 12월 5일과 12월 6일 공익제보 관련 상을 수여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11월 30일 팀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조퇴 또는 유계결근으로 각 1시간씩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해당 팀장은 협조요청에 대하여 "회사 CEO를 폄하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조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승인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틀간 불과 1시간씩 정도의 조퇴를 불승인하고 무단조퇴 처리하여 해임징계의 가중 양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무단조퇴에 대한 일련의 결정도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고객본부는 신청인에 대해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을 귀책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때,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요구하면서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무단결근 사실과 사규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징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이라는 징계양정을 요구하면서, 선행 불이익조치인 전보로 인한 당사자의 통근거리, 직무변화, 건강상태 등 신청인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병가신청 사유에 관한 사실유무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가평지사장의 의견만 듣고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해임 요구를 했다고 진술한 점, 인사위원회의 구성원 7명 전원이 □□□의 지사장, 센터장, 부장 등의 내부 간부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사부서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한 구조 등으로 볼 때 공익신고자인 신청인을 퇴출하기 위해 □□□ □□□□□고객본부는 해임의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는 3차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최근 유사한 사유로 해임된 □□□ 직원 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도 본 건에



대해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므로 노동 관련법을 근거로 노동사건을 판단하는 노동위원회에 결정에 기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서 유사 사례라고 주장하는 위 사건은 공익신고와 전혀 관계 없는 사건이므로 유사하다고도 볼 수 없다.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승인하고 있음에도 □□□는 신청인에 대해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된 이후 가평지사까지 출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2시간 30분이 걸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허리통증이 심한 경우 출근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출근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여 직무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신청인의 결근 및 조퇴가 회사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져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 해임은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판단된다.

3.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판단

가. 보호조치 결정의 근거 및 타당성

법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법 제20조제1항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12. 4. 30 신청인의 공익신고 후 '12. 5. 9. 원거리 전보라는 1차 불이익조치를 한 바 있고, '12. 12. 31. 해임이라는 2차 불이익조치를 취한 바, 신청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 □□□ □□□고객본부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해임조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보호조치 등 결정 내용

그렇다면 신청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 □□□□□고객본부장은 해임조치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당한 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공익신고자인 신청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한 주식회사 □□□ □□□□□고객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30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다.



정 본 입 니 다 .

2013. 4. 26.

국 민 권 의 위 원

